

**북극해 이용 활성화 및 북극항로 진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조승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285
----------	-------

발의연월일 : 2025. 9. 25.

발 의 자 : 조승환 · 김성원 · 김태호
인요한 · 유용원 · 이종욱
서지영 · 이성권 · 이달희
정성국 · 김상훈 의원
(11인)

제안이유

기후변화 가속으로 북극해 해빙이 빠르게 진행되며 북극해를 활용한 개발·이용의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음. 특히 북극해 주변국을 중심으로 해양자원 개발과 해운·물류 거점 확보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물류망 확보와 신산업 창출 등 북극해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국가적·전략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북극해 이용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안들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지원·활성화하기 위해 북극해 주변국들과의 국제협력 강화를 포함한 거점지역 지정, 전문인력 양성 및 연구개발, 북극항로 진출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경제 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북극해 이용을 활성화하고 북극항로 진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해양수산부장관은 북극해 이용을 활성화하고 북극항로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북극해 이용 및 북극항로 진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3조 및 제5조).
- 다.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북극해 및 북극항로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 라. 북극해 이용 및 북극항로 진출·운영 등에 관하여 관계 부처 간 의견을 조정하며 종합적인 국가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북극해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7조).
- 마. 해양수산부장관은 북극해 이용 및 북극항로 진출을 통한 지역별 특화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국가관리무역항이 위치한 지역을 북극해 이용 및 북극항로 진출 거점지역으로 지정·육성하여야 함(안 제10조)
- 바. 국가로 하여금 북극해 이용 및 북극항로 진출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체제 구축 및 현장 전문인력 재교육 등

의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사. 정부로 하여금 북극해 이용 및 북극항로 진출 지원과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연구·개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북극해 이용 및 북극항로 진출에 필요한 해외동향 및 관련 데이터의 구축·제공, 해빙 현황 및 항로 안전 정보 제공 등을 위하여 북극해운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자. 정부로 하여금 북극해 이용 활성화, 북극항로 진출의 지속적인 확대와 관련 국가 간의 협력 강화를 위하여 관련 기술 및 전문인력의 국제교류 등에 필요한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차.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여금 북극해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업으로서 북극해 이용 및 북극항로 진출과 관련한 사업 중 미래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하여 특히 신속하게 추진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재정과 금융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북극해 이용 활성화 및 북극항로 진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북극해 이용을 활성화하고 북극항로 진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북극해”란 북위 66도 30분 이북의 해역을 말한다.
2. “북극항로”란 북극해를 지나 대서양과 태평양을 잇는 항로로서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북동항로와 북서항로를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외국 및 국제기구와 맺은 극지 관련 국제 조약을 준수하며 북극해 이용 활성화 및 북극항로 진출과 관련 산업 발전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북극해 이용 활성화 및 북극항로 진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북극해 이용을 활성화하고 북극항로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북극해 이용 및 북극항로 진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북극해 이용 및 북극항로 진출에 관한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북극해 이용 및 북극항로 진출을 위한 추진전략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3. 북극해와 북극항로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
4. 북극해 이용 및 북극항로 진출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기술
개발에 관한 사항
5. 북극해 이용 및 북극항로 진출 거점지역의 육성에 관한 사항
6. 북극해·북극항로 관련 기반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7. 북극해 이용 및 북극항로의 진출을 위한 세제·재정·행정 지원
등에 관한 사항
8. 북극해 이용 및 북극항로 진출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
안
9. 북극해·북극항로와 관련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북극해 이용 및 북극항로 진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제6조(실태조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
시행하기 위하여 북극해 및 북극항로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및 그 밖의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북극해위원회) 북극해 이용 및 북극항로 진출·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고 관계 부처 간 의견을 통합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북극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북극해 및 북극항로에 대한 종합적인 국가전략 및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북극해 및 북극항로 관련 관계 부처별 실행계획과 주요 정책의 추진성과 점검 및 정책 조율에 관한 사항
3. 북극해 이용 활성화 및 북극항로 진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 발굴에 관한 사항
4. 북극해 이용 활성화 및 북극항로의 진출을 위한 법령·제도 개선 건의에 관한 사항
5. 북극해 및 북극항로 이용 관련 국제 규범 및 협약 추진 지원

6. 북극해 이용 및 북극항로 진출 관련 이해관계자의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북극해 이용 및 북극항로 진출을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대통령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외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국무조정실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2. 대통령비서실에 과학기술, 해양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보좌관

3. 북극해 관련 기술·경제·사회·국제협력 등의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제3항제2호의 위원이 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른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前任)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後任)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10조(거점지역의 지정·육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북극해 이용 및 북극항로 진출을 통한 지역별 특화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항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무역항이 위치한 지역을 북극해 이용 및 북극항로 진출 거점지역(이하 “거점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육성하여야 한다.

1. 거점지역의 지정학적 위치
2. 거점지역의 특화 산업
3. 공항·철도 등 교통시설 현황
4. 배후산업의 기능 및 여건
5. 그 밖에 거점지역 지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거점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거점지역의 지정·육성에 관한 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거점지역의 지정의 목표·전략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2. 거점지역 관련 인력·시설 및 인프라 확충에 관한 사항
3.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거점지역의 지정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거점지역의 지정·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행정상 특례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거점지역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거점지역의 지정·육성을 위한 세부 지정기준 및 지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① 국가는 북극해 이용 및 북극항로 진출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1. 북극해 이용 및 북극항로 진출에 부합하는 기술·경제·사회·국제협력 등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체제 구축
2. 산학 협력 활성화를 통한 전문인력의 양성
3. 국제협력 등을 통한 글로벌인재의 양성
4. 북극해 이용 및 북극항로 진출을 위한 현장 전문인력의 재교육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가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북극해 이용 및 북극항로 진출 관련 연구개발 등) ① 정부는

북극해 이용 및 북극항로 진출 지원과 그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연구·개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정부는 북극해 이용 활성화 및 북극항로 진출 관련 기술을 효율적으로 개발·육성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에 관한 투자를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학계·연구기관·산업계 간의 협의체 구성 및 공동 연구를 촉진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북극해 이용 및 북극항로 진출 관련 국내외 연구개발 동향, 시장 동향 등 국내외 연구개발에 관한 정보를 수집·조사하여 이를 체계적·종합적으로 관리·보급하여야 한다.

제13조(북극해운정보센터)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북극해 이용 및 북극항로 진출에 필요한 해외동향 및 관련 데이터의 구축·제공, 해빙 현황 및 항로 안전 정보 제공 등을 위하여 북극해운정보센터(이하 이 조에서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센터의 설치·운영을 그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국제협력 등) ① 정부는 북극해 이용 활성화, 북극항로 진출의 지속적인 확대와 관련 국가 간의 협력 강화를 위하여 관련 기술 및 전문인력의 국제교류, 국제행사への 참가,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외교부장관은 북극해 이용 및 북극항로 진출과 관련하여 정부를 대표하여 국제기구 또는 외국 정부와의 협력 및 교섭 업무를 담당한다.

제15조(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 기획재정부장관은 북극해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업으로서 북극해 이용 및 북극항로 진출과 관련한 사업 중 미래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하여 특히 신속하게 추진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제16조(재정·금융 등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자 등에게 재정과 금융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제17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계 기관·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